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70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	: 2001. 8. 20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	: 2001. 8. 21	
다. 상 정 일 자	: 2001. 10. 24	총무위원회 상정
라. 의 결 일 자	: 2001. 10. 24	총무위원회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·정원이 승인됨으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전담기구의 설치(안 제3조제1항)
- 기구명칭 : 현장민원해결과

○ 부서간 업무조정(안 제3조제2항)
- 자치행정과 → 현장민원해결과 이관
  · 120 민원기동대 운영, 상조민원처리,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
- 종합민원실 → 자치행정과 이관
  · 병무 및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
- 현장민원해결과 → 신설
  ·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
  · 종전 자치행정과의 120민원기동대 운영, 상조민원처리, 농어촌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·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제8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었으나 심사결과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연계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한 안건임.

○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·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·정원이 승인됨으로 군 본청에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○ 전담기구 명칭과 부서간 업무조정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○ 참고로 경남도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창원시를 비롯하여 14개 시·군이며, 심사보류 및 준비중인 시·군은 우리 군을 비롯하여 6개 시·군임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를 승인한 시·군 현황과 전국적인 추이는

● 답 : 경남도내 한시기구를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·군은 창원시를 비롯하여 14개 시·군이며,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전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